

(앞쪽)

제 호
동물용의약품의 제조 · 품질관리 조사관증
사 진 3.5cm × 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배경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)
성 명
농림축산검역본부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53mm×85mm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소 속
성 명
생 년 월 일
위 사람은 「약사법」 제38조의4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· 품질 관리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1.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 ·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 · 창고 · 점포나 사무소,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 ·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를 거부 · 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 다.
2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.